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5. 12. 2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수정 이유

- 조문 내용의 명료화와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선발) 제2항 중 “고등학교 및 대학교” 를 “고등학교 및 대학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4조(선발) 제2항중 “ 고등학교 및 대학교“를 고등학교 및 대학”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추천) 의용소방대장은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<u>소방서·군(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. 이하 같다)관할 구역별</u>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<u>소방서장 또는 군수(소방서 미관할 구역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게</u> 추천한다.</p>	<p>제3조(추천) ----- ----- ----- <u>소방서</u> ----- ----- -----<u>소방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3조(추천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선발) ①<u>소방서장 또는 군수</u>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<u>시·군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순위에 따라</u>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유공표창증 장관이상 상순위 표창</u>을 받은 대원의 자녀 5. ~ 6. (생략) 7. <u>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</u> 8.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	<p>제4조(선발) ①<u>소방서장은</u>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</u>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소방서장 이상</u> ----- ----- 5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삭제>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선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장학생의 정원) ①소방서와 군(소방서 미관할구역)의 전체의 소대원수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한다.</p> <p>②장학생은 중·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4: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②----- ----- -----하며, <u>고등학교 및 대학교</u>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소방서장은 ----- ----- --.</p> <p>제5조(장학생의 정원) ①장 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대원수 -----5/100로 한다.</p> <p>②----- <u>고등학생과 대학생</u>을 지역 및 의소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·선발한다.</p>	<p>②----- ----- -----하며, <u>고등학교 및 대학</u>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 다만,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장학생의 정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장학금액) <u>중·고등학생에게</u> 지급하는 장학금을 <u>공납금 전액</u>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<u>100만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장학금액) <u>고등학생에게</u> ----- ----- <u>공납금 전액</u>으로 하며, ----- -----<u>고등학생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</u>로--.</p>	<p>제6조(장학금액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(생략)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<u>1월</u>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을 수여한다. 단, 필요에 따라서는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2월</u> ----- ----- ----- 다만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----- -----<u>각호 1</u>----- 1. ~ 2. (생략) 3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<u>100분의 50</u>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.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----- -----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삭제> 4. <삭제></p>	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1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소방서장은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</p>	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9조(장학생의 관리)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한다.</p>	<p>제9조(장학생의 관리) 소방서장은 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9조(장학생의 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(생략)</p>	<p>제10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(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